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

결 정

사 건 2020카단 채권가압류

채 권 자

송달장소 :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(만성동 1366-9)(송달영수인:전종필)

채 무 자

대구

제 3 채 무 자

유한회사

대표이사

주 문

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.

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

청구채권의 내용 2019. 6월 운송대금, 같은 해 7월 운송대금

청구금액 금 29, . . . 원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

판 결

사 건 2020가소 운송료
원 고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(만성동 1366-9)

피 고
최후주소 대구

변 론 종 결 2020.

판 결 선 고 20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9, 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부터 2020.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